

의안번호	2219496
의 퇴 인	박주민의원
회 답 일	2026.08.20.
추계번호	26C330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③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900만원, 2031년 6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간 18억 3,300만원(연평균 3억 6,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43	—	—	—	—	43	8.6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11	11	11	11	11	57	11
실태조사(안 제14조)	555	—	577	—	601	1,733	347
합계	609	11	589	11	612	1,833	367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기존 연구용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가 정보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되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교원의 양성 및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1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2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제1항). 교육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3조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16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교육부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항).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에 따른 국가 등의 시책 수립·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 지원 대상 등이 현시점에서 불확정적이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6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중앙행정기관의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7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8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안 제9조 (교원의 양성 및 연수) 안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안 제12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안 제13조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각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¹⁾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²⁾ 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교원 양성,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임 · 교육부는 해당 사업 지원 목적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8억 7,000만원이 교부됨 ·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의 확대·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 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 양 ³⁾ 을 반영하고, 기초소양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음 ⁴⁾ *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례 현황
5	안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운 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6	안 제16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	· 제정안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 우 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여부가 불 확실하고, 지정 시 수행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 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4)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2021.11.24, 13p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③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안 제14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6조) 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추계
 -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안 제7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을 추가재정소요로 가정하고,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 참석 수당 외에 임차료 등 부대 경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 현행 「디지털포용법」 제11조제1항⁵⁾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 동 조사는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접근·활용 수준 등을 측정하여 제정안의 실태조사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해당 조사의 조사 인원 및 단가를 준용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5) 「디지털포용법」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의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300만원으로 추계

[표 2]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사례

(단위: 만원)

주제	기관명	연도	연구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교육부	2021	2,727
도서관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6,500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	4,000
전국민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제고 방안	"	"	4,000
평균			4,307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43	-	-	-	-	43	8.6

주: 1.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기존 연구용역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700만원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규정⁶⁾을 고려하여 구성원 25명 중 19명으로 함

6) 안 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디어·교육·법률·장애인·고령자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단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30만원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회의 횟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준용하여 연 2회로 함

[표 4]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촉위원 수(A, 명)	19	19	19	19	19	—	—
단가(B, 만원)	30	30	30	30	30	—	—
회의 횟수(C, 회)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 (D=A×B×C, 만원)	1,140	1,140	1,140	1,140	1,140	5,700	1,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안 제14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7억 3,300만원으로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실태조사 예산(5억 8,200만원)에 명시된 산출 근거인 조사 인원(15,730명)과 단가(37,000원)를 준용함
 - － 단가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제정안의 규정⁷⁾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기는 2년으로 함

7) 안 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표 5]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조사 인원(A, 명)	15,000	—	15,000	—	15,000	—	—
단가(B, 만원)	3.7	—	3.8	—	40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555	—	577	—	601	1,733	347

주: 1.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기존 연구용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2025.6.5.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0.7.5.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¹⁾	2024.9.26.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2025.4.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5.2.2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2023.4.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4.3.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3.10.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1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5.2.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2.2.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7.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2021.2.18.
전라남도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8.1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3.10.12.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0.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2021.12.17.

주: 1)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가 2024.9.26.자로 폐지되고 해당 조례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